

## 성신교정 상대평가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학업성적 상대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대평가) ① 학부 및 대학원의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상대평가에 의한 성적등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부

A등급 : 30% 이내

A+B등급 : 80% 이내

C등급 이하 : 20% 이상

2. 대학원(단, 교회음악대학원 제외)

A등급 : 60% 이내

B등급 이하 : 40% 이상

③ 제2항의 비율에 의한 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반영한다. (예: 81명  $\times$  30% = 24.3명  $\Rightarrow$  25명)

④ 추가시험, 성적 이의 신청에 의한 성적 정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적등급비율을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교학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제3조(상대평가 제외 과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.

1. 교직과목

2. 수강인원 20명 미만 과목

② 제1항에서 지정한 과목 이외에도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.

제4조 [삭제 2009. 2. 19]

### 부 칙

①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③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되, 2015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.